

# 大學 自律에 맡겨야 한다

宋 柄 淳

(嶺南大 教育學科)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려 130여 개교의 대학이 있다. 이 중 국립 24개교를 제외하면 사립 대학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私學 의존도는 약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학의 수에 비추어 볼 때, 특색있는 대학이 있을 법도 한데 천편일률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공장처럼 규격화되어 있다.

학생선발의 기준, 교육과정의 구성, 학사일정, 심지어 학생이 주체가 되어 기회·구성되는 각종 축제의 내용까지도 대동소이하다. 전국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같은 기준에 의해 대학이 운영되고 비슷한 교육과정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고작 설립의 주체가 국립이냐 사립이냐, 남·여 공학 대학이냐 여자대학이냐와 같은 외형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각 대학의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

보기 어렵다.

한국 대학의 특성있는 발전의 문제는 대학의 양적 성장에 따른 질 제고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입시철마다 공개되는 대학 서열화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며, 대학교육은 물론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構造的問題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특성 있는 대학의 육성은 대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의 정상화에도 직결되는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대학이 나름대로 특성 있는 발전을 하지 못한 요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교육방법, 대학의 학사행정 등 모든 것을 당국이 일정한 규준을 제시하여 일일이 지시·명령·감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국의 지시·

명령·감독에 따라 이를 임기·용변으로 넘기는 데만 급급하고 대학 스스로 대학을 대학답게 발전시키기 위한 자체 노력이 부족했었다는 점이다. 대학이 대학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부실 운영함으로써 외부의 지시·명령·감독의 빌미를 주어 사회 일반으로 하여금 대학에 대한 외적 통제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도 있다.

대학교육에서 教育課程은 교육목표 실현의 구체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교육과정은 교육활동을 매개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는 대학교육의 특징을 가늠하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가보다 정부당국에 의해서 취득학점이 결정되어 각 대학에 시달되고, 이에 비추어 교육과

정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한국 대학의 교육과정은規格化되어 있고 각 대학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함으로써 序列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성있는 대학 발전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학생선발권, 학사운영, 교육과정 결정권 등을 각 대학의 고유권한으로 大學自律에 맡겨야 한다. 이 중에서도 교육과정 결정권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은 특색있는 대학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의 교과와 이수 학점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경직되게 운영함으로써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特性없는 大學

교육법시행령 제119조 대학의 교과에 대한 규정과 제120조 이수단위에 대한 규정은 대학 교육과정 구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교육법시행령 중 대학의 교과와 이수학점에 관한 규정은 1952년 4월 23일 대통령령 제633호로 제정·공포된 이래 6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교육법 시행령 제119조 大學敎科에 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의 교과는 일반 교양 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한

② 일반 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 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 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③ 일반 교양과목의 학점 배정기준은 전체과목 학점의 30%로 한다. 다만 실업계 학과 종 특정 산업에 소요되는 인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 할 수 있다.

④ 일반 교양과목은 인문과학·자연과학 및 예체능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해야 한다.

⑤ 대학에서 재학중 전공할 수 있는 학과는 2개 학과 이내로 하되, 하나의 학과만을 전공하는 경우에는 전공학과 이외의 학과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상 교육법시행령 제119조 대학 교과에 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대학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요소로 과목 구성의 영역을 필수적으로 이수 해야 할 일반 교양과목, 선택해서 이수해야 할 일반 교양과목,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 선택해서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체과목 중 일반 교양과목의 비율을 30%로 하여 과목 간 균형의 기준점이 구체화되어 있고 일반 교양과목의 영역을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및 예체능 계열과목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복수전공과

부전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대학 교과에 관한 규정은 1989년 2월 28일 일부 개정·공포된 교육법시행령 제119조의 내용에 입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요 골격은 실험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74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7220호로 개정·공포된 교육법시행령 제119조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실험대학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당시의 교육법시행령 제119조에는 국민윤리·한국사·교련·체육을 국책 필수과목으로 하여 이를 법적 교양 필수과목으로 이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현행 교육법시행령의 대학 교과에 관한 규정 제119조에는 국책 필수과목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교양과목의 영역을 제시하는 정도로 개정된 점이다.

당시 국책 필수과목으로 이수된 국민윤리·한국사·교련·체육 등은 이들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더 중요한 과목인가, 보호를 받아야 할 의미가 있는 과목인가, 보편적 교양의 성격을 많이 담고 있는 과목인가, 소위 국가관 확립에 꼭 필요한 과목인가 등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학생들의 교련 이수 반대, 병영집체교육 반대 등 강한 저항에 부딪쳐 국책 필수과목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腹修學點제도는 크게 세 차례에 걸쳐 큰 변화가 있었다. 1952년 교육

법시행령 제정 당시 총 이수학점은 180 학점으로 하여 1주당 1시간의 강의를 1 학점으로 하여 학기당 23 학점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다. 제정 당시 180 학점 이수 규정은 1954년 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160 학점으로 인하 조정되었고 이 기준은 1972학년도까지 지켜졌다. 그러나 1972년 당시 문교당국이 전국 각 대학에 실현대학으로의 전환을 권장하였고 이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이 졸업 소요 기준학점을 140 학점으로 인하 승인해 주었다. 따라서 전국 각 대학은 계열별 모집에 부전공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문교부로부터 의과대학 등 일부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졸업 기준 학점을 140 학점으로 승인받고 이는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현행 이수학점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시행령 제120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학의 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1 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설기·체육 및 기타 학적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 32시간의 강의를 1 학점으로 한다.

② 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 학점으로 한다.

③ 대학의 매학기 취득 기준 학점은 18 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은 21 학점으로 한다. 단, 성적 우수자에 대한 초과 취득은 3 학점 이내로 한다.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 이외에 특별시험을 통하여

12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매계절 학기당 취득학점을 6 학점으로 규정(조기졸업 등을 위한 학점취득의 법적 근거)한다.

④ 대학 예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2 학점 이상으로 한다.

대학 이수학점인 140 학점의 규정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으나, 최근 일부 학과에서는 150 학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수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원장사항인 유사학과의 통·폐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점학과의 졸업학점은 150 학점으로 상향조정되고 있다.

### 學點의 法的 규제, 教育課程을 규격화한다

대학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에서도 교육과정이야말로 그 대학의 특징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대학들은 예외없이 오랜 전통 속에서 발전시켜 온 그 대학 특유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운영에 있어서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일일이 예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그리나 한국의 대학들은 교육과정의 구성과 그 운영에 있어서 독창성을 찾아 보기란 매우 힘들다. 세로이 설립되는 학과와 대학들은 외국의 유사학과나 대학의 교육과정 혹은 국내적으로 먼저 설립된 학과나 대학의 교육과정을 모방하기 때문에 독특한 창학정신을

구현하는 특성보다는 그 模倣性이 더욱 두드러진다. 문제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교수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의 교육과정을 본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학과의 명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 학과의 교육과정을 거의 똑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 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 대학의 교육과정이 그 모방성을 탈피하지 못한 이유는 지나치리만큼 세밀하고, 경직되게 운영한 法制度의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 구성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이 치밀하면 치밀 할수록 교육과정 구성권은 제한된다. 1952년에 제정·공포된 교육법시행령은 대학 교육과정 법제도화의 시발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학의 교육과정 구성권에 대한 외적 통제를 정당화한 법적 조치였다. 따라서 관련조문이 바뀔 때마다 대학의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안정성을 갖추어야 할 교육과정이 바뀜으로 해서 각 대학은 이를 변화를 수용하기에 급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대학이 독창성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창학정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이를 구현하기란 실로 기대하기 어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험대학만 해도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그 질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계열별 모집,

부전공 실시 등을 이유로 졸업 학점을 140 학점으로 대폭 인하했지만 그 실효성을 거두었다기보다 오히려 대학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이 사실이다. 계열별 모집은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다. 부전공·복수전공·조기졸업 등의 제도는 실험대학이 실시된 지 약 2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실험대학의 실시와 동시에 대학의 교육과정으로 강제 이수된 국민윤리·한국사·체육·교련 등의 국책 필수과목은 한때 학원소요 사태의 원인이 되어 이로 인해 수업이 거부되는 등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는 대학 교육과정이 法的 統制에 의해 그 운영이 실제로 경직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한 단면이다. 또다른 한편으로 1 학기간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1 학점으로 하여 이수토록 되어 있는 단위학점 이수의 기준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지켜지느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1 학점당 16시간 이상의 수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의 각종 행사와 축제, 중간·기말고사 그리고 학교 외적 요인에 의한 학사일정의 단축 등으로 1 학점당 16시간의 기준 수업은 10 시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이미 타성이 되다시피한 학사

일정 운영의 관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한 경우에 일부 대학들은 수업은 하지 않고 시험기간을 2주씩 연장하여 수업일수를 채우기도 한다. 이것 또한 해당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법적·제도적 기준을 경직되게 운영하여 그것이 빚어낸 모순이다. 동시에 각 대학의 책무성에도 문제가 있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대학이 이러한 책무성을 다하지 않는 한 또다른 외적 통제의 빌미를 주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쟁적으로 내적 발전을 도모하여 보다 특성있고 성숙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과 이수학점과 관련이 있는 과목당 시수와 학점, 기준학점, 과목수, 교양과 전공과목의 안배 등에 대한 大學의 自由競爭 체계로의 획기적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학생선발, 교육과정 결정, 학사운영에 관한 계반권한이 대학으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실질적인 권한은 당국이 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고 그 질을 높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학생선발, 교육과정 구성,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당국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유경쟁체계로 전환시켜 각 대학을 특성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도 이제는 더 이상 당국이 설정한 최소한의 기준만 지키면 된다는 무사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독자적 노력을 스스로 경주하는 보다 성숙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또다른 외적 통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나름대로 특색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다. ■

## 劃一的 규제는 獨創的 대학 발전의 걸림돌

대학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규제나 획일적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대학의 외형적인 변화, 예를 들면 대학의 신설, 입학 정원의 확대, 대학 건물의 신축 등은 공권력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은 대학의 내적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는 대학 스스로 특성있는 대학 발전을 지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대학 스스로의 自己改革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학의 질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이 서로